

4. 賃貸住宅建設促進法施行令改正(案)

立法豫告 1990.5.15 公告

1. 개정안의 주요내용

가.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사업자의 범위에 임대주택을 양도받아 임대하는 임대전문업자를 포함하여,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에게 건설한 임대주택을 양도받아 임대업은 영위할 수 있도록 함.

나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대한주택공사, 주택사업자 또는 당해 기업체가 주택이 없는 도시영세민 또는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영구임대주택이나 사원임대주택은 분양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사원임대주

택의 경우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함.

2.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0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16절지 세워서 작성)를 건설부장관(참조: 주택국장, 전화번호 503-736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